

제공일자	2012. 12. 3(월)	담당자	조용운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18 011-1790-1100	총1매

제목 : 『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(안)에 대한 검토』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조용운 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CEO Report 『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(안)에 대한 검토』를 발간하였음.
- 건강생활서비스란 의료행위 이외의 생활습관 관리 및 질병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
 -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이유로, 보건소의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 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.
 -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급증 및 고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

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진입 허용 필요

-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누출,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.
- 지난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던 손숙미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(안)을 건강생활서비스법(안)으로 법(안)명을 바꾸어 입법을 추진

○ 당시 폐기된 법안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를 비의료서비스로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개설·출자·투자가 제한된 바 있음.

-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의 판매 등 타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산업이 동 서비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

□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허용하여야 함.

○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낮출 수 있어 보험사업 본업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음.

- 따라서 보험회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밖에 없고, 동 사업 자체에 대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.

○ 그 외에도 보험회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저변확대에 기여 할 수도 있을 것임.

□ 다만,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허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회사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

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하도록 하고,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인정보 교류를 금지

○ 또한, 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률'과 법리적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기업의 시장독과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.

□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생활서비스법(안)은 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되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